창의, 실용, 현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
선진일류경제 구현

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

보도자료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

보도일시	2010. 12. 30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0. 12. 30(목) 14:00	담당부서	예산기준과 기금운용계획과
담당과장	윤 병 태 (2150-7150) 성 일 홍 (2150-7170)	담 당 자	안주훈 사무관 (2150-7154) 김만수 사무관 (2150-7172)

제목 :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, 통보

- 수입관리 강화,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 등 -

□ 기획재정부는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「**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**」을 **조기에 마련**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(2010.12.30)

※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음

○ 집행지침을 신속히 통보한 것은 예산이 예년보다 조기에 통과되어 가능한 일로서, 각 중앙관서의 **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지원**하여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는 한편,

○ 예산 집행의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**재정사업의 성과**를 높이고 **예산 낭비를 방지**하기 위한 것임

□ **2011년 집행지침의 특징**은

① **재정 조기집행**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**재정낭비를 방지**

○ **경기 체감도**가 높은 일자리, 서민생활안정, 대규모 SOC 사업을 **별도로 중점 관리**하고, 지자체보조·출연사업 등은 **최종수요자 기준으로 실집행실적**에 대한 **관리를 강화**

○ 외화예산, 복지급여 등은 **조기집행을 지양**하고, 각 부처별로 예산낭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**'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'에 보고**토록 함

* '11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: 57%

② **재정건전성 강화**를 위해 세외수입 등에 대한 **수입관리 지침을 신설**

○ **유가증권 매각, 미수납채권, 국유재산관리수입, 정부배당 수입**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

- 각 부처는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**유가증권 매각계획***을 제출하고, 민영화 등 주식 매각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

* 매각에 착수하는 시장조건 및 최소 매각 물량 포함

- **미수납채권 및 연체료 회수계획**을 **연 1회 이상** 수립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 조치 강구

- **기금의 미납 부담금**에 대한 징수노력 및 적극적인 채권회수 추진

○ 자금운용기관 분산, 금융상품 다원화,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을 통해 **기금 여유자금 운용**의 **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**

③ **예산절감** 및 집행의 **책임성·투명성 제고**

○ 각 부처의 자율적인 집행 효율화를 위해 **'예산집행심의회'**를 **구성·운영**토록 함

- 7인 이상(민간위원 2인이상 포함)으로 구성하며, 소속기관 등 집행 현장별로 **'분임예산집행심의회'** 운영 권장

- **예산집행결과 평가, 예산절감 방안 및 낭비·우수 사례 발굴** 등에 대해 **심의토록** 하여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

○ 보조사업 공모시 민간위원이 2인이상 포함된 **'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'** 구성을 의무화하고, **보조금 정산기한*** **설정, 관련 자료의 5년간 보관의무 부과** 등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

* 사업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민간보조는 2월내, 지자체 보조는 3월내

○ 국내항공 이용시 **저가 항공사**(Low-Cost Carrier) **이용 권장**

○ **R&D 및 정보화 예산의 장비구입 집행 효율화**

* (R&D) 기 구축된 장비와의 공동 활용방안 및 중복성 여부 사전 검토 후 구입

* (정보화)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설치시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타당성 사전협의

○ 정보화 예산의 **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등 집행탄력성 부여**

④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

○ **에너지 절약 투자계획 수립·시행**

○ **에너지 고효율** 사무 환경 구축 및 **청사 관리**

○ **전기차**·하이브리드차 등 **에너지 절약형 제품 우선 구매**

< 붙임 > 1.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내용
2.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참고1 **「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주요내용**

중점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관리강화

□ 세외수입 등에 대한 예산 수입관리지침 마련 (신설)

※ '11년 세외수입예산(일반+특별회계) : 244,714억원

○ **(유가증권매각수입)**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**1월말까지 유가증권 매각계획***을 제출하고, **민영화 등 추진 현황**을 주기적으로 점검

* 매각개시에 착수하는 시장조건 및 최소 매각물량 포함

※ '11년 예산 : 15,251억원

○ **(미수납채권)** 매년 **회수계획 수립,** 적극적인 **채권보전 및 채권 회수 조치** 강구

※ '09년 말 연체채권 잔액 : 85,636억원

○ **(국유재산관리수입)** 국유재산관리수입 **증대방안** 강구, **연 1회 이상 연체료 징수계획** 수립 등 연체 최소화

○ **(정부출자 수입)** 수입예산 규모, 기관 특성, 타 기관의 배당수준, 사내유보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**적정 정부 배당**

○ **(기타) 신용카드 연계 재정사업시** 발생하는 **부수수입 국고 납입**

□ 기금 수입 증대관련 지침 강화

○ **(미수납 부담금)** 징수노력 및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 강구

○ **(여유자금 운용 효율화)** 자금운용기관 분산, 금융상품 다원화,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을 통한 **수익성 증대** 및 리스크 관리 강화*를 통한 **자금의 안정성 강화**

* 기준수익률, 허용위험한도, 적정유동성 등의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 점검

중점 ② 재정집행의 투명성·책임성 제고

□ 각 부처 '예산집행심의회'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(신설)

○ **(구성)** 민간전문가 2인 이상 포함하여 **7인 이상**

* 각 중앙관서장은 소속기관 등 자체 주요 예산집행단위별로 **'분임예산집행심의회'** 구성·운영 가능

※ (예) 국토해양부의 경우 본부 이외에 각 **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해양관리청**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·운영 가능

○ **(심의사항) 예산집행 결과평가, 예산절감 방안 및 낭비·우수사례 발굴**

- 소속 기관별,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**종합평가**
- **집행우수·예산낭비 사례 발굴·포상·전파**
-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**자체 예산집행기준 마련**
- 자발적 예산 절감을 위한 **직원 동기부여 제도** 마련 등

○ **(심사기준) 합법성, 효율성, 합목적성, 보충성** 기준에 따라 심사

○ **(심의 효과)** 심의회 부의 중인 사업은 **집행 유보**,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업은 **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** 가능

□ 보조사업 집행의 책임성 강화

○ 공모방식의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시 민간위원이 2인 이상인 **'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'**(5인~15인)를 구성

○ 보조사업 정산사유* 발생시 **2~3개월내****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사업 수행 관련 **주요자료의 5년간 보관 의무** 부과

* 사업완료, 사업폐지, 회계연도 종료

** 민간보조 2개월 이내, 자치단체보조 3개월 이내

중점 3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

□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낭비 방지

○ 공무원 정원외로 운용하고 있는 **기타직*** **예산 증액 및 재외공관 행정원의 운용 계획 변경**시** 기획재정부와 **사전협의**

* 전문계약직, 위원회 상근직, 청원경찰 등

** 인건비 단가, 공관별 인원배분 및 행정원 총정원

○ 국내항공 이용시 **저가 항공사**(Low-Cost Carrier) **이용 권장**

○ **정보화 및 R&D 예산**의 **시설·장비 구입 효율화**

- **(정보화)**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설치코자 하는 경우 행안부 통합전산센타와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
- **(R&D)** 기 구축된 장비와의 **공동 활용방안 및 중복성 여부 사전 검토** 후 구입하고, **과제 종료 시점**에는 구입 지양

○ 인쇄홍보물 및 공개가능한 인쇄물은 **전자우편,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**하고 제작 물량은 최소화

□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

○ **정보화 예산의 낙찰차액** 사용 범위를 **계속사업의 경우**에도 허용하여 확정된 정보화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

* 현재는 낙찰차액을 정보화 보안 및 감리비 지원에 한정 사용

○ **에너지절약전문기업**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대상에 **시설장비유지비 추가**

* (현행) 공공요금(210-02), 연료비(210-08) → (추가) 시설장비유지비(210-09)

중점 ④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적극 추진

□ 현장중심의 특별점검체계 운영 등으로 **조기집행의 실효성 제고**

○ 예산집행특별점검단(월 1~2회), 부처별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**집행상황 점검** 및 **집행애로 요인** 적극적 발굴·해소

○ 경기 체감도가 높은 **일자리, 서민생활안정, 대규모 SOC 사업**은 별도 **중점 관리**하고 공공기관, 지자체에 대한 출연·보조사업은 최종수요자에 대한 **실집행 실적 관리 강화**

□ 조기집행을 위한 **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사항 준수 철저**

○ **(문화재 발굴 및 조사기간)** 시군구 경유절차 등 **불필요한 절차 생략**을 통해 단축(64→30일 이내)

*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('10.2월 제정, '11.2월 시행)

○ **(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검토·심의 기간) 중복적인 주민 의견 수렴절차 축소**로 단축(250→100일 이내)

*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('08.12월 개정, '09.1월 시행)

□ 조기집행으로 인한 **재정낭비 최소화**

○ **외화예산, 인건비**, 공공요금, 복지급여 등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

○ 사업계획 수립, 공모, 자치단체의 사업준비 등 **사전준비 강화**

○ 각 부처별로 외부지적 사항 및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례 등을 **종합 검토**하고, **매 분기별 예산낭비 방지, 사업성과 제고** 등을 위한 **제도개선 시행**, 이를 분기별로 **'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'에 보고**

중점 5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

※ '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(총리지시 제2010-3호) 반영

□ 공공기관 **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*** **시행 (신설)**

* 당해 연도 에너지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**일정수준의 절감목표 수립,** 이를 달성하기 위해 **지속적인 에너지절약활동 추진**

○ 공공요금, 연료비 등 **에너지 관련 예산** 최대한 **절감 집행**

○ **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·시행***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**에너지절약 사업 적극 추진**

* 매년 자체 「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」을 수립한 후 **연간추진계획에 따라 단열개선, 고효율기자재 구입 등 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·시행**

□ **에너지 고효율** 사무 환경 구축 및 **청사 관리**

○ 공공청사 신축시 **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**에 맞춘 **설계·시공**

○ **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** 및 **절수형 수도설비 의무화**

○ 에너지 절감형 **공공청사 운영**을 위해 **적정 실내온도 유지**

* 적정실내온도 : 여름철 냉방 28℃이상, 겨울철 난방 평균 18℃이하

□ **정부자산 취득**시 **에너지 절약형 인증제품** 우선구매

○ **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** 또는 **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구매**

○ **조명**의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 **LED 제품 우선구매**

○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, 하이브리드 **및 전기** 자동차를 **50% 이상 구입**

- '11년 신규사업인 **전기차 보급사업**(환경부소관 '11년 예산 170억원)을 **적극 추진**

참고2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개요

□ **집행지침**은 **예산집행**의 **기본원칙**과 **기준설정**을 위해 작성

○ '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'주요비목별 집행지침'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

○ 국가재정법 제44조(예산) 및 제80조(기금)

- **국가재정법 제44조**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**국가재정법 제80조**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□ 집행전반의 기준인 **일반지침**과 **사업유형별·비목별 지침**으로 구성

○ **일반지침**은 예산배정 유보,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

○ **사업유형·비목별 지침**은 인건비·정보화예산·자치단체보조·운영비 등 사업유형별·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□ 지침은 각 부처 **예산집행 공무원**들이 준수해야 하는 **표준규범**으로

○ **감사** 등에 있어 예산 **집행의 적정성** 판단 기준으로 작용